혹시.. 내 주변에서도? 경제적 학대를 진단해 보세요!

경제적 학대 선별 체크리스트

	예	아니오	
1	노인의 돈을 빌려 가고 돌려주지 않는다.		
2	노인의 자산(집, 차, 돈 등)을 가로채려고 한다.		
3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돈을 사용하려고 한다.		
4	노인의 사회복지급여(연금, 기초수급비, 기타 수당 등)를 가로채려고 한다.		
5	노인의 집, 재산 등의 명의를 자식 및 타인 등의 명의로 변경하라고 강요한다.		
6	자식에게 부양을 약속하고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다.		
7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은행 계좌에서 큰 액수가 인출되거나, 빈번한 자금 이체가 발생하는 등 수상한 거리가 발생 하였다.		
8	노인의 재산을 자식이나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9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 금융관련 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10	치매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		

※ **위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경제적 학대를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해주세요!

경제적 학대가 의심되거나, 직접 경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혹은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로 신고하세요!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Q.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보호되나요?

네, 보호됩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위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다운로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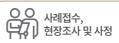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전문상담,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연계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노인학대예방교육
홍보사업	이동상담, 언론홍보, 학술행사, 캠페인, 사진전시회, 노인학대 예방의날(매년 6.15)기념행사 개최 등
협력체계 구축사업	중앙·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후원, 자원봉사 사업
노인인권보호 사업	노인인식 개선사업,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 사례개입 절차











∟인학대 사례 판정 응급, 비응급, 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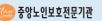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서











경제적 학대, 얼만큼 발생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노인학대 신고접수 _______ 19,391건

2021년 전체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노인학대 판정 6,774건

노인학대 신고접수사례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

경제적학대 _______ 40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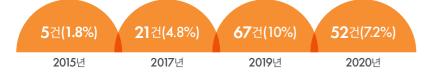
그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학대 건수

신체적 학대		4,390건(41.3%)
정서적 학대		4,627건(43.6%)
방임		691건(6.5%)
자기방임*		204건(1.9%)
경제적 학대		406 건(3.8 %)
성적학대		260건(2.4%)
유기	I	46건(0.4%)

연도별 경제적 학대 현황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411	381	426	431	406
%	5.6	4.7	5.2	4.4	3.8

시설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학대 현황



시설 입소(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학대는 무엇일까요?!

"시설 입소(이용)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어르신의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어르신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의 현금, 물건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노령 연금, 장애인 연금 등의 통장 및 카드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노인의 공적 부조를 출금하게 하여 현금을 갈취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서비스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행위
- 퇴소 시 (계약에 근거한)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관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의 재산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명의도용 등)
- 동의 없이 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을 계약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 사용이나 그 결정을 통제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헌금, 공양, 후원금, 기부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 노인이 희망하는 현금을 비롯한 재산 사용을 아무 이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
- 금융 서류, 계약서, 위임장, 유언장 등에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어떤 경제적 학대가 발생하나요?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학대시례

1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 뿐이예요"



갑작스럽게 치매가 찾아온 강윤자 어르신은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자녀들은 친척의 도움으로 강윤자 어르신을 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고, 유선으로 시설장에게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금으로 입소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몇 개월 후 시설에 방문한 강윤자 어르신 딸이 통장내역을 살펴보던 중 입소비용 외의 수많은 지출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설장에게 추궁하여 물으니, 치매증상이 있는 강윤자 어르신에게 허락을 받고 다른 어르신들 간식까지 모두 구입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 기억해주세요 ★

위 사례와 같이 도움을 드린다는 명목하여 경증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당 어르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는 명백한 경제적 학대이며 금지행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에서는 불가피하게 은행업무를 대신해야 하는 경우, 보호자나 가족에게 사전에 알리고, 지출 내역과 증빙 서류들을 정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친밀한 사이라 돈 관리는 대신 해줘도 될 줄 알았어요"



A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박말자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하여 본인의 케어를 담당해주는 김OO선생님에게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인출 요청 횟수가 늘어가면서 어르신의 통장, 카드 신분증을 김OO 선생님이 직접 보관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어르신의 아들이 용돈입금을 위해 카드를 달라고 하자 박말자 어르신은 본인에게 없다며 김OO 선생님에게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당황스러운 아들은 시설장에게 입소노인의 개인 카드까지 직접 관리하는지 물었으나, 시설에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기억해주세요 ★

위 사례와 같이 어르신의 생활비 지출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통장이나, 도장 등의 관리를 위임하여 피해를 보는 어르신들의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재산 관리 통제 및 권리 침해 행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어르신의 허락이 있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보관, 인출, 사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에 재산 관리 관련 서류는 입소노인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치매어르신의 경우는 가족 등 보호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각종 신탁서비스 혹은 후견제도 이용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